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구직급여 일액의 상·하한액의 역전을 예방하기 위해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기한을 규정하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료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26조제1항제3호)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방식 변경(안 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제104조의15제4항)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변동되는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결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방식을 기존의 정액 결정 방식에서 하한액과 연동된 방식으로 변경함

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한 근거 마련(안 제86조제4항)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기간을 청구권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라.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자료요청 범위 확대(안 제142조의2 제1호 나목 및 다목)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위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급여 환수 및 직장 가입자격 변동상실 등 그 사유와 관련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대상 자료범위에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여성 실업자”를 “실업자”로 한다.

제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의 1,000분의 1,37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8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4조의8제4항의 “6만8100원을 말한다”를 “제68조제1항에 따른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104조의15제4항의 “6만8100원을 말한다”를 “제68조제1항에 따른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142조의2제1호나목 중 “자료 및”을 “자료,”로, “부과 자료”를 “부과 자료, 급여의 환수 및 그 사유와 관련된 자료”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료 및”을 “자료,”로, “보험료액 자료”를 “보험료액 자료, 직장가입자격 변동·상실 및 그 사유와 관련된 자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기재취업수당 청구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급여기초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은 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및 제104조의1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4. 삭 제

5. (생 략)

② ~ ⑧ (생 략)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
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② (생 략)

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
만8100원을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
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
당하는 최저임금액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의 1,000분의 1,37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
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2
항에 따른 청구권이 발생한 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68조제1항에 따른 급여기
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100분

⑤ ~ ⑧ (생략)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8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u>6만8100원을 말한다.</u>	<u>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u>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제68조제1항에 따른 급여 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u>
⑤ ~ ⑧ (생략)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 1. 각종 연금·보험 및 임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생략)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 <u>자료</u> 및 월별 연금보험료 <u>부과 자료</u>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 ----- ----- ----- ---. 1.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u>자료,</u> ----- <u>부과</u> <u>자료, 급여의 환수 및 그 사유와 관련된 자료</u>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 <u>자료</u>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u>보험료액</u> <u>자료</u> 라. ~ 아. (생략) 2. ~ 4. (생략)	다. ----- ----- <u>자료</u>, ----- ----- <u>보험료액</u> <u>자료</u>, <u>직장가입자격 변동·상실 및 그 사유와 관련된</u> <u>자료</u> 라. ~ 아.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2